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당선자 없음

5.17-5.29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인문극장 2022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2013년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까지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해 왔다. 2022년에는 ‘공정’을 주제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공정 Fairness

신은, 혹은 자연은 공정하지 않다.

만물은 다르게 생겼고 다른 위치를 갖는다. 고르고 균일할 것 같은 원자 상태에서조차 에너지의 상태가 다르다. 원자를 벗어나 단위가 커질수록 다른 점이 늘어나고 차이는 더 벌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독특하게 생겼다는 것이 이치인 셈이다. 그 생김새에 따라 쓰임도 다르고 역할도 따로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와 기본 정신은 ‘법 앞에 평등’이고 그것은 ‘공정’을 기초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가 다른 형태와 능력을 지녔지만, 그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평등한 인격체라는 것에는 모순이 없는가? 모든 것이 똑같은 세상은 죽은 세상이다. 두 곳의 온도가 같다면 둘 사이에 열은 흐르지 않는다. 두 곳의 농도가 같다면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한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차이와 불균형은 긴장을 낳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움직인다. 이 세계가 에너지와 활기차게 움직이면서도 ‘공정’을 구현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공정’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이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세대, 성별, 인종 등 근본적인 차이를 어떻게 ‘공정’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움직임을 어떻게 미래를 향한 힘으로 다듬을 수 있을까?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에서 이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강연

연강홀

4.4	‘공정’이란 무엇인가?	최정규
4.11	대한민국 능력주의의 뿌리	김호
4.18	공정의 역습-우리 시대 청년들의 ‘공정’	천관율
4.25	공정과 불평등	송지우
5.9	공정함을 원하는 뇌, 그리고 행동	김학진
5.16	공정과 성차, 그리고 과학	임소연
5.23	공정, 미래 조직의 핵심 가치	김정희원
5.30	비례적인 권리와 반비례적인 사랑	김원영

전시

두산갤러리

Skyline Forms On Earthline 4.20-5.25

작가 김민정 문서진 최태윤 황예지

공연

Space111

당선자 없음 5.17-5.29

작·드라마터그 이양구	출연 김상보 박수진 신강수 이윤재
연출 이연주	이주영 황은후

웰킨 6.7-6.25

작 루시 커크우드(Lucy Kirkwood)	출연 고윤희 김별 김정아 라소영 민대식 백종승
번역 김수아	부진서 송영주 송인성 안민영 이선주 이세영
연출 진해정	이정미 이하영 하지는

편입생 7.5-7.23

작 루시 서버(Lucy Thurber)	연출 윤혜숙
번역 한원희	출연 공상아 김하람 이지현 조의진 최호영



공연 소개

〈당선자 없음〉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하기까지를 배경으로 제헌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속기록을 비롯한 제헌헌법 관련 각종 문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관계된 회고록, 평전 등 비공식적 역사 자료까지 참고하는 한편, 상상력을 통해 의회 바깥에서 진행된 헌법 제정 과정의 이면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정의' 혹은 '공정'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최초의 사회계약 과정을 통해서 오래 전 '합의'한 것임을 이야기한다.

시놉시스

어느 날 박 피디는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의뢰받는다. 박 피디는 라 작가와 헌법학 전공자인 금 교수를 섭외하고,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든 사람들을 다루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결정한다. 박 피디와 라 작가는 역사 속 그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작·연출 <문밖에서><복도에서><씨씨아이취케이>
 작 <노란봉투><일곱집매>
 연출 <집집> 하우스 쇼나타<이게 마지막이야> 외

수상
 2017 윤영선연극상
 2015 제3회 레드어워드 <노란봉투>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5 공연 베스트 7'
 2014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복도에서>



작가 노트

1. 이 극의 제목인 ‘당선자 없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를 기념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 국민축하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정부 수립 기념 표어’ 현상 모집 결과에서 따온 것이다. 현상 공모에 응모한 4,353편 중 1등 당선자는 없었고 2, 3등만 정했는데 상금은 각 100만 원씩이었다. 2등은 ‘오늘은 정부수립 내일은 남북통일’, 3등은 ‘새나라 새살림 너도 나도 새일꾼’, ‘받들자 우리 정부 빛내자 우리 역사’였다. ‘당선자 없음’이란 제목은 해방 이후 통일된 나라를 만들지 못한 채 남한 단독 선거로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헌법 초안의 작성 과정에 광범위한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도 담고자 하였다.

2. 이 극은 현재와 과거로 나누어져 전개된다. 과거의 시간은 1945년 12월 임시정부가 한국으로 돌아왔던 시기부터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같은 해 7월 17일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하기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속기록, 국회보를 비롯한 제헌헌법 관련 각종 문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관계된 회고록, 평전 등 비공식적 역사 자료까지 참고했다. 당초 제헌의회 회의록 등에 남아 있는 공론장에서 전개된 역사적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구성하려던 데서 벗어나 국회에 제출된 헌법 초안 작성 과정에 대한 상상을 중심으로 극중극을 전개하였다.

3. 한편 현재의 시간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제작사를 배경으로, 편집권에 대한 검열 논란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검열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 논란은 촛불혁명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던 나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극 속 과거와 현재의 시간은 모두 정치적 격동의 ‘전환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나는 전 정부 탄핵 이후 치러졌던 선거와 올해 대선까지 지속적인 변동 과정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해방 후 단독정부 수립까지의 시간을 동질적 시간으로 인식하였다.

4. 이 극에서 보여주는 제헌헌법(초안)의 제정 과정과 정부 수립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정의 혹은 공정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최초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합의’되었는지, 사회계약의 작성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가 마치 자연 현상이라도 되는 듯 여기고 있던 공정함의 기준이란 것이 실상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으며 그 합의는 변화된 기준에 맞추어 재합의될 수 있는 것임을, 당대를 살아갔던 인물과 현재를 사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의 교차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작·연출 <인정투쟁; 예술가 편>〈전화벨이 울린다〉
 작 <당신을 초대합니다>〈이게 마지막이야>〈어느 마을〉
 연출 <오마르-결국 내가 될 수 있는 것>〈이반검열〉 외

수상
 2019 제56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인정투쟁; 예술가 편>
 2017 제8회 두산연극예술상 공연부문



피디 그리고 보면 화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헌법 자체를. 그래서 거기에 적힌 말들이 살아있는 현실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해 본 것 같아요.

교수 그런 측면이 있죠. 여기 적힌 말들은 저절로 현실이 되진 않아요. 누군가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요즘은 다 아는, 헌법 1조 1항처럼요.

피디 아, 1조 1항. 그렇죠.

교수 아직은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1조 2항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피디 1조 2항은 뭐였죠? (교수가 보여준다.) 아, 그러네요.

헌법이 살아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디의 말은 저의 말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대본을 보면서 연습하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많습니다. <당선자 없음>의 연습은 무언가를 지식, 정보로 아는 것과 나의 현실로 실감하는 일 사이의 거리를 체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 제헌헌법의 이야기와 지금의 현실을 이어보는 연습은 늘 멀고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먼 거리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는 중이지만, 저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은 또 다르겠죠. 인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서로의 위치와 거리가 다른 만큼 그에 따른 시선도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위치와 선택, 그것의 연결 또한 생각해봅니다. 살아있는 현실로 만드는 것도 사람들의 몫이니까요. 특정한 사람들의 몫이 아닌, 그것을 꾸준히 연결해온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저 또한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조심스럽게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함께 느끼며 각자의 위치를 끝없이 고민하는 여섯 분의 배우 분들과 스태프 분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정리 이양구(작/드라마터그)

이익균점권은 제헌헌법 제18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배분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헌법기초위원회의 초안에는 이익균점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익균점권은 근로자의 경영참가권과 함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주로 한국민주당계 의원들이 그런 조문을 명기한다면 기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맹렬히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이익균점권을 제헌국회에 제출한 것은 1948년 6월 23일 국회본회의에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올라온 헌법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뒤였다. 대한노총이 제출한 안은 다음과 같다.

노동과 기술은 자본으로 간주한다. 관, 공, 사영 일체기업체에 속한 노동자는 임금 이외에 당해 기업체의 이윤 중에서 최저 30% 이상 50% 이내의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각개 기업체에 대한 구체적 이익배당율은 국민경제회의의 결의를 거쳐 법률로써 정한다.

이익균점권이 본격 논의된 것은 1948년 7월 3일 국회 제24차 본회의에서였다. 제헌국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수정 논의 과정을 편집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시환 제17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제1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초안의 2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것은 그대로 두고 제3항을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내용은 ‘기업주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 이외의 적당한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균점시켜야 한다.’입니다. 민주주의는 다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만 실행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하자고 하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몇 년 동안 시끄러운 큰 원인이 두 가지 사상의 대립입니다. 사상의 대립을 완화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래는 대단히 비참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여 노자 간의 협조가 실행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본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를 본받은 것도 아닙니다.

김준연 나는 원안을 지지합니다. 노동자에게 이익을 균점할 권리를 줄 경우 도리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흥되지 못하여서 노동자들이 취업할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동자를 위한다는 목적이 도리어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제18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준 나는 문시환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이 안은 헌법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정사회를 건설한다는 근본적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앞으로 수립될 남한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명문으로 더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노동자 농민이 앞으로 생길 정부를 지지하는 대신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박해극 본인은 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8할이 노동자, 농민입니다. 우리가 신생국가를 건설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지주가 농민을 착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기업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전진한 제가 소속된 노총의 입장이 아니라, 전민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세우는 정부에 대한 영향 또는 남북통일에 대한 영향 또 우리가 건국 후에 우리 민족이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략) 이익분배는 절대로 노동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에 따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노동자의 복리를 위해 또 노동자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 정당하게 참여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아닐 것 같으면,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균점의 권리는 평화주의의 길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노일환 노동자가 기업의 운영자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논리상 기업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노동자를 기업의 운영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기실 허울 좋은 문구일 뿐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이익의 배분에 균점권을 가진다는 조병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성득 우리는 노동자가 어떤 처지에 있고 무엇을 생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노동자는 남의 공장에서 벌어먹고 얻어서 입으면서 그날그날 처지가 막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점이 중요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생산기관을 움직일 사람들이 사라지고 오직 자연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모순도 사라지겠지요.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연구하고 이 이익균점권을 규정한 조문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운 누군가는 제17조가 수정된다면 우리 삼천만 민족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조선 민족의 2할을 점하고 있는 특수계급에 있는 사람의 말일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일제하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 대중을 무시하고 일부 특수계급만이 잘 사는 모순된 사회가 현실까지 계속되어 있으므로 단일민족인 우리 동포가 양분되어 유혈의 상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포여, 분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헌법 초안 제17조를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헌법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 일대 격론이 일어난 이 순간 북한 동포나 남한 동포나 시청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 바다 가운데 제주도에서 우리 민족끼리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참경 속에서도 서로 총대를 버리고 본 헌법 제17조가 어찌 되었는가 하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헌법은 8할을 점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을 토대로 삼는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는 민족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수정안을 제출하신 두 분은 상호 상의하여 두 가지 수정안을 한 개의 수정안으로 만들어서 가부를 물을 때 수정안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독립도 여기에 있을 것이며 오직 우리 민족의 사는 길도 여기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익균점권은 결국 7월 5일 25차 회의에 가서야 규정된다. 극 중 언급되는 이승만 의장의 관련 발언도 소개해 둔다.

의장 이승만 우리가 지나간 백 년이라든지 몇천 년 동안에는 자기 개인의 권리로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분들의 생각에는 노동자라는 것은 그저 흑독히 부려먹고 의례히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전체를 물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국이라고 성립될 적에 벌써 민주라고 하는 그 두 자로 다 타파된 것입니다. (중략) 우리 민주진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결정되어가지고 있는 길은 무엇인고 하니, 자본가라는 것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자기 노예처럼 부려서 저의 자본의 이익만 만들자는 그것을 타파해야 되겠

고, (중략) 그러므로 해서 나는 찬성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18조, 19조가 이것이 다 원만하게 된 줄 압니다. (중략) 노동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자본가는 이익이 우리 자본가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정부 수립을 못한다고 이렇게 되면 노동자나 자본가나 지주나 다 이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를 수립한 뒤에는 내일 모레라도 그것을 고쳐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길게 말하지 말고 헌법을 하로바빠 통과해 가지고 정부를 조직해서 일어나자고 하면 누가 앞든지 남의 나라 사람의 정부보다 나를 것이 아닙니까?

한편 이렇듯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익균점권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 헌법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이익균점권을 제헌헌법의 화석이라고 지칭한 것은 황승홍 교수이다. 이 '화석'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당선자 없음>에서 작가는 우선 '화석'의 의미를 헌법 초안을 수정하고 이익균점권을 제헌헌법에 새긴 (멸종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해석하였다. (극을 작성하였던 초기에는 친일 '관료'들로 해석하였다는 점도 밝혀둔다.)

*참고 문헌 별도 표기(p.40)

제헌헌법 관계 초안 비교

정리 이양구(작/드라마터그)

<당선자 없음>에서 언급되는 제헌헌법 관계 초안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46년 3월 1일 행정연구위원회 및 헌법분과위원회가 확정헌법 초안의 전문은 1958년 7월 17일 발간된 『국회보』 제20호에 실려 있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초안을 흔히 행정연구위원회 1단계 초안이라고 부른다. 이 헌법 초안은 국가의 통치조직 구성을 앞세우고 기본권 규정을 후술한 것이 편제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항은 아래와 같다.

한국헌법

제1편 국가의 조직

제1장 국가

제1조 한국은 민주공화국임

제2조 한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발함

제3조 한국 국민의 요건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함

제2장 국회

제4조 국회는 대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써 성립함

대의원은 국민이 대의원의원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균등직접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선거한 의원으로써 조직함

참의원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함

하인(어떤 사람)이든지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됨을 부득함 (중략)

제3장 대통령급(및)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내각

(중략)

제2편 국민의 권리의무

제1장 국민

제56조 국민은 법률상 일률균등함

제57조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향유함

(하략)

한편 흔히 유진오 사안으로 알려진 유진오 안의 제1회 초고가 있고, 유진오가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안(‘사법부 제출안’)이 또 하나 있다. 이 두 초안은 조문의 순서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1회 초고에는 전문(前文)이 포함되어 있고 사법부 제출안에는 전문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유진오에 따르면 사법부 제출안에서 전문을 뺀 것은 본문과 달리 전문은 이론의 여지가 많고 그 이론을 조정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로 1회 초고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조선인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하여 기미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정의와 자유의 깃발[旗人발]밑에 민족의 국법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여 안으로는 인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밖으로는 모든 침략자의 야망을 격쇄하여 국제평화를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일구사팔년 월 일 우리들의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민의회에서 이 헌법을 의결한다.

행정연구위원회의 1단계 안과 달리 인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국회, 정부, 법원 등 통치조직을 후술한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극 중 언급되는 노동권과 관련한 조항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7조 모든 인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국회는 국민의회와 참의회의 양원으로 구성된다(제12조)고 하여 양원제 국회를 규정하고, 대통령을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한 것(제65조)도 특징이다. 한편 경제제도와 관련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을 경제적 자유보다 앞세운 것도 당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유진오의 1회 초고와 행정연구위원회 1단계 초안을 비교, 검토하여 만든 ‘합작안’이 있다. 이 합작안을 행정연구위원회 2단계 초안이라고 부르는데 세칭 유진오 안으로 더 많이 불려서 다소 헷갈리기도 한다. 아무튼 이 유진오 안은 유진오의 1회 초고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를 앞세우고 통치조직을 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연구위원회의 1단계 안과 다르다.

제88조 조선민주공화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인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민족경제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한편 이 극의 단서가 되었던 행정연구위원회와 유진오 초안 중 어느 것이 ‘합작안’ 작성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진술이 존재한다. 가령 행정연구위원회 총간사였던 최하영은 이렇게 회고한다.

“솔직히 말씀하자면 헌법의 기초자 및 심의원들이 모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왜정 때 관리를 지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초하고 심의한 것이라고 떠들고 나가는 것은 자숙근신 한다는 입장에서 좀 꺼렸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외적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혹평을 안받을 만도 하고 또 헌법전문가(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무슨 헌법전문가가 있겠습니까 ... 있었다면 거짓말이죠)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아무 법률이라도 다소 법률 강의를 한 경험을 가진 인물의 이름을 빌려서 내보내자고 해서 결국 유진오씨를 초청해서 이분의 명의로 하자 해서 유진오씨를 제2단계의 헌법심의 멤버에 가입시킨 것입니다.”

헌법기초과정에 대한 최대 논란은 바로 이 합작안 작성 과정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유진오는 “자연지세로 나의 초안을 주로 하고 최씨 등이 작성한 초안을 참고로 하여” 심의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연구위원회 멤버였던 장경근은 자신들이 완성해 두었던 1946년 3월 1일의 1단계 초안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유진오의 안을 가미하여 토론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최하영 또한 1단계 안과 2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한 초안 사이에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 없이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의기준안으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전문의 경우도 장경근이 작성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의 세밀한 논의를 길게 소개할 수는 없으나 전문가들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유진오의 안을 바탕으로 행정연구위원회의 안을 참고하여 ‘합작안’이 만들어졌다고 본다는 점을 적어둔다. 한편 양쪽 작업에 모두 참여하였던 윤길중도 회고록에서 유진오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서, 학문적으로는 이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는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인 듯하다. <당선자 없음>은 행정연구위원회의 입장에 주목하는 (학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의) 연극을 극중극으로 전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방송에 담지 못하게 하려는 가상의 검열 논란을 설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극을 전개하고자 했다.

아무튼 2단계 안이 제헌국회에 공식적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로 넘어가고 헌법기초위원회가 다시 검토 과정을 거쳐 제헌국회 본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여 헌법심의가 이루

어진 것이다. 한편 1948년 5월 ‘합작안’을 만들 당시 미군정청 사법부법전편찬위원회가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한 헌법초안(권승렬 안)도 있었다. 이 초안은 유진오의 ‘사법부 제출안’과 대동소이하고, 6장과 7장의 순서를 바꾸고, 교육제도를 독립된 장으로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앞서 논의된 모든 초안들 이외도 대한민국건국강령(민국23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에서 공포),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 등이 영향을 미친 요인이 많아서 극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당선자 없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 그친다.

아무튼 <당선자 없음>에서는 이상 논의된 초안들에 공통적으로 이익균점권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문가’들의 초안 작성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대다수 주권자인 노동자, 농민 등 ‘당사자’들이 국회 본회의 전개 과정에 개입하여 수정[‘합작’]안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여 수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헌헌법 제18조 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배분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참고 문헌 별도 표기(p.40)

<당선자 없음>: 제헌의 연극과 연극의 제헌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헌법이라는 법

헌법(憲法)은 국가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인 구조 및 구성에 관한 정치적 투쟁 또는 타협의 결과를, 국민의 이름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법 규범적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을 말한다. 헌법은 본래 인권과 민주주의와 무관하게 국가의 조직, 구조, 체제 그 자체 또는 그것을 정한 법이다. 서구의 근대 이후에 이르러 기본적인 인권 목록이 헌법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헌법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조직을 정한 법으로 탈바꿈한다. 헌법 안에는 지배자의 합리적 통치법인 측면과 피통치자의 권리로서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길항(拮抗)하면서 공존한다.

헌법적 정의(正義)와 성문(成文)의 헌법전(憲法典) 그리고 현실적인 국가 체제로서의 헌법은 어긋나 있다. 헌법 문서는 개략적이고 압축적이어서 불가피하게 배제와 탈락을 포함하고 있다. 규범 실현의 문제에서 헌법 문서는 그 매개일 뿐 정의와 규범 그 자체는 아니다. 헌법의 문언은 기본적 인권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규범으로 요청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헌법해석과 헌법실천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자칫 헌법 문언 자체를 절대시하는 물신주의(物神主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67조 제4항을 금과옥조처럼 받들 이유가 없다. 국회는 정기회 회기를 100일로, 임시회의 회기를 30일로 묶어 놓은 헌법 제47조 제2항을 꼭 지켜야 할 까닭도 없다. 유신독재 체제에서는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 회기를 헌법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 헌법조항들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헌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는다. 선거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국회는 일을 훨씬 더 해야 하는 게 헌법적 정의다. 헌법 문언에 지나치게 충성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하게 한다.

2. 제헌의 연극

연극 <당선자 없음>은 제헌(制憲), 즉 헌법 만들기의 과정에 관한 연극이다. 헌법이 제정된 시기, 즉 1948년 5월 10일의 선거 이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할 때까지를 다룬다. 이때의 제헌은 문자(text)로 조문화하는 헌법의 제정이다. 한 나라의 체제를 구축하는 헌법의 내용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조성되었을 리 없다. 헌법의 성문화 작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유진오와 권승렬을 거론한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 문서화의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문서 이전에 헌법적인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선언과 약속을 통해 사람들은 제헌의 주체인 인민이 된다. 미국의 1787년 연방헌법 제정 이전에 1776년 7월 4일의 독립운동과 독립선언이 있었다. 프랑스의 1791년 헌법제정 이전에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과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미국의 인민과 프랑스의 인민이 탄생하고 각 나라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에서의 제헌도 다르지 않다. 제헌헌법 전문(前文)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음을 밝히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이 결의의 주체로 등장한다. 대한민국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했다. 이러한 구조적 틀은 현재의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의”가 “다짐”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결의와 다짐의 본질은 서로에 대한 맹세다. 맹세는 서양의 역사에서 정치적 약속의 기초다. 법을 완성하는 원리다. 맹세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이 따른다.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후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태어남으로써 이 맹세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여 이 맹세의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참여는 수동성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성을 내포한다.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일종의 모순적 긴장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다. 민주주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는 목표이자 규범이다. 만장일치는 소수자의 횡포에 휘둘릴 수 있고, 추첨은 무책임을 배태할 수 있으며, 대의제와 다수결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억압과 동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단순히 읽는 대상으로서 문서만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다. 헌법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동사에서 탄생했고, 그것을 통해서만 살아간다. 극본과 연기가 결합하는 연극과 닮은 면이 있다. 연극은 공연을 통해, 헌법은 실천을 통해 각자의 정의를 실현한다.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시간과 사건을 쌓아가면서 헌법의 규범의식을 공유한다. 연극 <당선자 없음>은 제헌의 의미와 그 과정을 확장함으로써 그 길을 보여주는 제헌의 연극이다.

3. 대한민국헌법 제헌의 역사적 현재적 맥락

제헌 자체는 시간과 실천의 축적물이지만, 헌법의 성문화 과정은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뤄지곤 한다. 역사적 숙의(deliberation)를 바탕으로 하지만, 압축적인 논의에 따라 헌법의 문언이 결정된다. 제헌헌법 역시 그때까지의 역사적 조건과 환경과 그리고 인민의 여론에 터 잡아 당시의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 그리고 직접적인 성문화 참여자의 투쟁 또는 타협의 결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당시 민중들은 조선의 봉건적 신분 질서 해체와 일제 식민 지배 청산 등을 통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원했다. 당시 노동자들의 공장 자주 관리 운동은 ‘지금까지 일본인 밑에서 땀 흘려 일했던 공장은 우리들의 것’이고 노동자들이야말로 공장과 기업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외적 주권 독립 실현의 한 도구로서 ‘균등 경제의 지향’ 및 식민지 완전 독립 실현을 위한 ‘국가 경제의 자립 도모’로 표현되었다.

유진오가 헌법제정 초안을 기초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에 앞서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어야 했던 배경이다. 제헌헌법 제84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규정한 맥락이기도 하다.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함께 사기업(私企業)에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보장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익 노동조직이었던 대한노동조합 -어쩌면 방어적인 입장에서- 국회에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이익균점권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익균점권은 제헌헌법 이전 헌법안의 계보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잇고, 제헌헌법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제84조)의 일환이 되며, 현재 헌법의 ‘경제 민주화’(제119조 제2항)로 연결된다.

제한헌법에서의 경제적 규범을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나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냐의 단순 잣대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적 정의는 제한헌법의 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면서도 보편적인 정의와 맞닿아 있다. 설령 1954년 헌법, 즉 제2차 개헌을 통해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그 헌법 문언상의 규정이 헌법적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헌법적 정의와 어긋나 있음이 분명하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동력은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에 대한 착취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낙수(落穗) 효과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1인당 GNP 또는 GDP의 평균적 수치로 그 희생을 호도한 결과다. 작금의 현실은 대기업의 약탈적 산업생태계, 재벌 지배의 세습 자본주의와 부패 권력과 유착, 부동산 지대의 불로소득 사회, 위협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 안전 침해와 위험 가중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². 한국의 기업은 한편으로는 민중 착취자로서 성장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이 사회적으로 키운 기업이다. 제한헌법 초안에서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한다는 규정이 헌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까닭이다. 제한헌법 제88조는 공공필요 대신에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라고 그 적용 범위를 다소 좁혔다. 이러한 조항은 표현을 달리한 채 현재 헌법 제126조에 남았다. 제한헌법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동안 지체된 정의를 구현하고 누적된 부정의(不正義)를 걷어내는 일이 오늘날 제한 또는 개헌의 과제다.

4. 연극의 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제1문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제2문을, 국가는 잘 이행하고 있는가? 하루가 멀다고 안전장치가 없어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것만 봐도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제1항의 문언(文言)이 확연한데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국회는 헌법적 정의에 반(反)하는 기구다.

헌법 문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대)법원의 (대)법관 손아귀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에서 유래하고 독재정권이 시민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재단하고 침해하는 악랄한 수단임이 완전한데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합치하는 면이 있다고 살려줬다. 5.16 군사 반란 이후 18개 조문으로 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지금 26개의 조문으로 늘어났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소음(騷音)이라고 치부하고 있기까지 하다. 민주화된 세상이라는데 사람들은 대의제를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에 기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정부 비판적인 집회와 시위를 아주 쉽게 불법 집회 시위라고 재단하고,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트레일러형 안전 펜스’라는 무기를 개발 구매 사용한다. 독재 시대 최루탄을 대신하여 민주화 시대에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쏜다.

헌법은 그 자체로 정의가 아니고, 완전체도 아니며, 전능하지도 않다. 헌법은 역동적이고, 불안정하며, 결핍되어 있다. 헌법은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의 목소리와 행동이 결합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다. 헌법의 생명력은 헌법 자체에 있지 않다. 2022년 한국에서 헌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장애인들은 휠체어에서 내려 지하철 열차 바닥을 기는 ‘오체투지’ 행진을 통해 이동권 대책을 요구했다. 한 언론은 “출근길 대혼잡”이라고, 다른 언론은 “내일 출근길 서두르세요”라고 제목을 뽑았다. 사람들의 맹세를 가르고 헌법적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짓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차 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장애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은 120분 정도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하철 출근 시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인권활동가 미류와 이종걸은 국회 앞에서 단식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금 헌법의 정의는 법전에 얽매지 않거나 활자화된 헌법 조문이 아니라 박경석, 미류, 이종걸을 비롯하여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와 말 그리고 행동과 실천의 몸짓으로 헌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부정의한 권력에 저항함으로써 헌법을 계속해서 만드는 이들에게 깃들여 있다. 부정의 권력을 향해 투쟁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살아있는 헌법이다.

5. ‘당선자 없음!’

헌법은 불법의 수단이기도 했다. 5.16 군사반란세력은 1962년헌법 부칙 제5조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불법 입법을, 유신내란세력은 1972년헌법 부칙 제7조에서 비상국무회의의 불법 입법을, 12.12 군사반란 및 1980년 5.17 내란세력은 1980년헌법 부칙 제6조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불법 입법을 옹호한다. 헌법에 근거한 제소나 이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반란과 내란의 세력들은 헌법을 이용하여 그 범죄 행각을 엄폐하려 했지만, 역으로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을 범죄를 자백한 꼴이다. 헌법 전문에 예시되지 않았지만, 유신독재에 항거한 사람들과 80년 광주에서 저항한 사람들이 헌법적 정의를 실현한 사람들이다.

헌법은 신성하지 않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명제 또한 치밀한 제도화와 끊임없이 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 실천하지 않으면 헌법 문언에 잠들어 있는 허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하고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대한국민’으로서의 다짐과 맹세는 문자 속에 화석화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제한의 주체로서 권리이자 책임이며 의무다. 누군가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소외되어 있다면, 아무도 존엄하지 않다. 제한에 당선자는 없다!

〈참고문헌〉

¹ 이국윤, 「제한헌법에 나타난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모습」, 『내일을 여는 역사』, 51호, 2013, 35-50쪽.

² 이병천, “이익 사유화와 비용 사회화, 지체된 전환”. 한겨레, 2019. 7. 12.

황승홍, 「제한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2002, 299-320쪽.
Agamben, Giorgio. 정문영 옮김. 『언어의 성사(聖事)』, 새물결출판사, 2012.

국장 役
김상보

연극

〈알마게스트〉 〈마리를 위한 아주 사소한 결정〉 〈숲에 이르기 직전의 밤〉
〈이게 마지막이야〉 〈수정의 밤〉 〈단지 세상의 끝〉 〈크리스천스〉 〈쉬지 스톱크〉
〈말뚝의 눈물〉 〈멘탈 트레블러〉 〈보물섬〉 〈The Jungle Book〉
〈한 여름밤의 꿈〉 〈일곱집매〉 〈페르퀀트〉

드라마

〈미생: 그들이 있었다〉 〈지리산〉 〈불가살〉

수상

2019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9 공연 베스트 7' 〈이게 마지막이야〉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2013 제34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일곱집매〉
제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2009 제2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 〈페르퀀트〉



박연수 피디 役
박수진

연극

〈지장이 있다〉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FAN〉 〈돼지떼〉
〈오직 관객만을 위한 두산아트 센터 스트리밍서비스공연〉
〈대신목자〉 〈Tribes〉 〈21세기...연극말이다〉 〈7번국도〉
〈타즈매니아타이거〉 〈배우에 관한 역설〉 〈엘렉트라〉
〈로동찬 유랑극장〉 〈그로토프스키 트레이닝〉 〈아무도 아닌〉
〈2017 이반검열〉 〈하나코〉 〈전화벨이 울린다〉 외

수상

2020 제57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윤길상/심공 役
신강수

연극
〈옥상 위 카우보이〉 〈여기, 한때, 가가〉 〈추락2〉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코미디
〈2021 코미디캠프: 어린시절〉

예능
〈스탠드UP!〉



최상영 役
이윤재

연극
〈조각난 뼈를 가진 여자와 어느 물리치료사〉
〈추락2〉 〈수정의 밤〉 〈누군가 올 거야〉
〈기억의 자리〉 〈랭귀지 아카이브〉 〈20세기 건담기〉
〈과학하는 마음-숲의 심연 편〉 〈리어왕〉
〈God Bless Baseball〉 〈나는 바람〉 〈배수의 고도〉
〈노래하는 샤일록〉 〈가모메〉

드라마
〈트레이서 시즌2〉 〈미생: 그들이 있었다〉 〈모두의 거짓말〉



라미호 작가 役
이주영

연극

〈콜타임〉〈그을린 사랑〉〈고역〉
〈와이프WIFE〉〈궁극의 맛〉
〈검은 입김의 신〉〈2017 애국가-
함께함에 대한 하나의 공식〉
〈육쌍동이〉〈반신〉〈냄비〉〈박제 갈매기〉
〈아가멤논가의 비극〉 외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드라마

〈한사람만〉〈홀타운〉〈아무도 모른다〉
〈아이템〉〈타인은 지옥이다〉〈열두밤〉 외

영화

〈비상선언〉〈다른 길이 있다〉
〈그녀가 부른다〉〈하모니〉 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지옥-두개의 삶〉 외

수상

2019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그을린 사랑〉
2003 혜화동 1번지 페스티벌
권력유감 展 ‘훌륭한 여배우상’
〈아가멤논가의 비극〉 외

김윤희 교수 役
황은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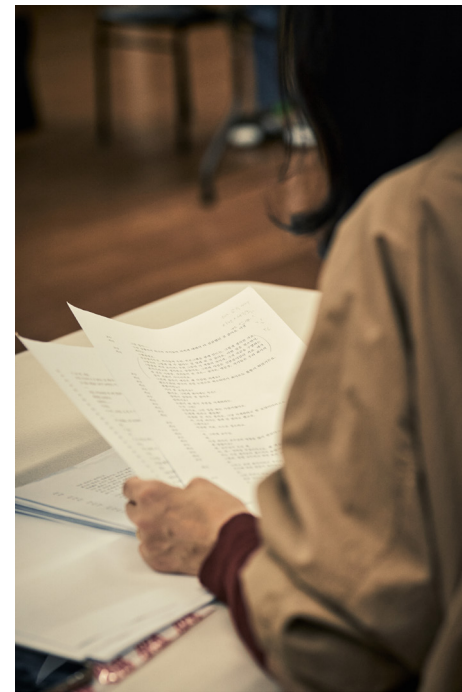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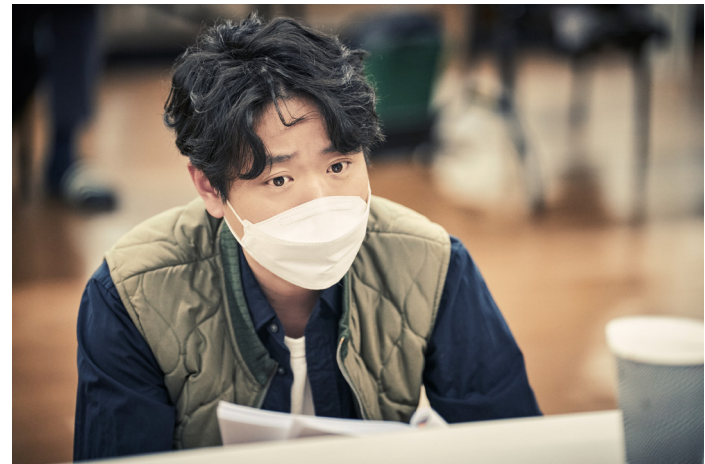
〈그 나쁜 선악과는 어떤 XX가 따먹었을까〉〈지정〉〈그을린 사랑〉〈작가〉
〈마른대지〉〈괄호는 괄호와 괄호사이 괄호가 될 수 있을까〉〈희곡상을 위한 희곡쓰기〉
〈와이프WIFE〉〈산책자의 행복〉〈피포논문-좁은 몸〉〈메이크업 투 웨이크업 2〉
〈암전〉〈메이크업 투 웨이크업〉〈당신이 알지 못하나다〉〈왕과나〉〈갈매기〉 외

수상

2019 제56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와이프WIFE〉







접근성 매니저 인터뷰

대화 강예슬 접근성 매니저(이하 접근성)와 윤빛나리 홍보마케팅 매니저(이하 홍보)
정리 윤빛나리(홍보마케팅 매니저)

홍보

〈당선자 없음〉 프로덕션에서 배리어프리 공연을 진행할 거고 접근성 매니저와 함께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접근성은 무엇이고, 배리어프리는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접근성

접근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최대한의 사용자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접근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고 나와요. 접근성이 낮다고 하면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접근성이 높다고 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공연으로 와서 접근성이 높은 공연이라는 것은 누구나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공연이에요. 제 스스로 접근성에 대해 정립하면서 ‘누구나’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이, 임산부, 공연을 처음 보는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된 개념으로요.

배리어프리는 말 그대로 장벽을 없앤다는 의미예요. 턱이나 계단과 같은 물리적인 장벽부터 차별과 같은 심리적 장벽까지 없애자는 운동이죠. 저도 워크숍과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알게 되었어요. 장애물을 없앤다는 개념 때문인지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

저도 〈당선자 없음〉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공연계에서는 배리어프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이

전에 두산아트센터에서도 배리어프리 공연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 공연에서 처음으로 접근성 매니저까지 함께 하면서 장애인 접근성부터 정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 접근성이란 것을 매니징(managing)하는 것은 무엇인지, 접근성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 질문할게요.

접근성

접근성 매니저로서 일하다 보면 저를 만나는 분들은 ‘그래서 접근성 매니저가 뭘 하는 건데?’라는 질문부터 해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자고 참여하는 모두가 동의하고 시작해도 공연이 올라갈 날이 임박하면 어느 순간 접근성과 관련된 일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접근성을 기준으로 공연을 만들거나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접근성에 관련된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 매니저라는 담당자를 두어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접근성 매니저는 이렇게 하면 관객이 접근하기 쉬울 것 같다고 제안하거나 준비한 것들이 관객에게 제대로 닿을지 모니터링하면서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홍보

이름하여 접근성계의 드라마터그!

접근성

대본이 무대화될 때 보완해야 할 점을 작가, 연출가와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드라마터그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공연을 만들면서 장애

인 관객에게 공연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놓고 여러 스텝과 소통하고 있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매개자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연출가, 피디와 함께 접근성 매니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매개자’였어요. 관객과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을 잇고, 접근성 서비스를 진행하는 스텝과 창작자를 잇고, 창작자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다면 그 사이를 잇는 역할을 접근성 매니저가 하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 파트에서 이해하고 있어도 각자의 업무에 가져가서 소화하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단계가 많잖아요. 여기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

극단에서 오래 활동했다고 들었어요. 그때의 활동이 각 파트 담당자와 소통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접근성

공연 만드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서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배리어프리 스텝들과 소통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작업이 공연 준비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공연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속한 극단 애인은 장애인 배우로 구성된 극단이기도 해요. 극단 안에서 배우와 스텝으로, 극단 밖에서는 관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만났으니까 그 경험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

그럼 극단 애인에 있다가 접근성 매니저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접근성 매니저로서 일하는 건 〈당선자 없음〉에서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접근성

사실 작년 한 해 연극 작업을 쉬었어요. 연출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잘 해내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연주 연출님이 ‘접근성 매니저’를 해보는 건 어떠냐며 일을 추천해 주셨어요.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접근성 매니저, 배리어프리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것 같고, 접근성이나 배리어프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런 저를 보고 극단 애인의 대표님이, 장애인 관객을 응대했던 저의 모습을 떠올려보며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객에게 다가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박하게 극단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관객과 편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접근성 매니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제안 준 이연주 연출님에게 접근성 매니저가 필요한 공연을 한다면 저에게 제안을 달라 말씀드렸어요. 연출님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 같고 함께 공부하며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며 시작했습니다.

홍보

접근성 매니저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직업에 대한 궁금증은 이쯤하고 〈당선자 없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공연에서는 접근성 매니저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접근성

하나는 공연장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당선자 없음〉 공연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로 나눠서 고민하고 있어요. 공연장 접근성을 체크하며 가장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 홈페이지였는데요. 가장 빠르고 쉽게 변화할 수 있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 문구와 예매 시스템을 살펴보다가 현재 두산아트센터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예매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홍보

맞아요. 저희는 별도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휠체어석 이용 관객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예매나 다른 예매처 콜센터를 안내하고 있어요.

접근성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화든 문자든 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늘리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홍보

그래서 이번에 배리어프리 3회차 공연의 전화, 문자 예매를 직접 진행 하셨잖아요. 공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 채널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접근성

계속 고민하는 지점은 홍보에 관한 건데요. 저는 당사자가 직접 홍보에 참여해보는 게 좋은 홍보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극장 접근성 안내 영상을 만들면서 농인 관객을 섭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선자 없음> 공연에서는 음성해설, 한글자막, 수어통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우스와 티켓 파트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관객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보다는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관객은 동반 1인까지 50% 할인이잖아요. 그게 활동 지원가가 함께 하기 때문에 도입된 건데, 제도만 놓고 보면 장애인과 함께 오는 비장애인은 활동 지원가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친구와 가족과 공연을 보러 올 수도 있잖아요.

홍보

그렇게 인식하면 장애인 관객은 무조건 활동 지원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오류까지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접근성

맞아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 관객 접근성을 고려할 땐 항상 인권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홍보

배리어프리 회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더 듣고 싶어요.

접근성

우선 배우, 스태프에게 접근성 매니저가 뭔지,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하고 시작했어요. 앞서 매니저님한테 말했던 것처럼 접근성에 대해 설명하고 제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그런 다음 예산에 맞추어서 배리어프리 회차를 정하고, 배리어프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스태프를 섭외했죠. 이번에 수어통역과 음성해설은 '공인수어통번역 잘함'에서 담당해요. 그에 비해 한글자막 제작 스태프는 전문 인력이 따로 없어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무대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는 음성해설을 하려면 무대에서 객석 어디를 향해 들리게 해야 하나 같은 것들도 체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정해야 하우스 파트와 함께 음성해설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는 객석을 안내해 줄 수 있거든요. 수어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이번 공연이 3면 객석이라 모든 면을 다 봐가면서 수어통역을 하기는 어려워서 정면 객석을 보고 수어를 하자, 통역이 필요한 분들은 해당 객석으로 안내하자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홍보

배리어프리 회차 말고도 공연 전 기간 극장에 상주하면서 관객을 응대한다고 들었어요.

접근성

네. 장애인 관객이 배리어프리 회차 말고 다른 회차에 올 수 있잖아요. 장애인 관객 응대를 위해 담당자가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담당자에 대한 안내도 사전에 꼭 공지되어야 하고요. 관객 접근성과 크게 맞닿아 있는 재난 대피라는 특수 상황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안내해 줄 담당자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관객이 안심하고 공연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공연에 접근성 매니저로 참여하기 전에 두산아트센터의 관객이기도 했고 창작자 중 한 명이기도 했어요. 이전에 두산아트센터에 왔을 때도 장애인 관객 접근성에 대해 고려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미 안내보행, 휠체어석 보유, 입말카드 등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당선자 없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장애인 관객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고, 관객에게도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서 공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거예요.

홍보

하긴 저도 어디에 문의하고 싶을 때 담당자의 직통 전화번호를 발견하면 일이 빨리 해결될 것만 같던데 공연을 보는 관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담당자가 있다는 것부터가 접근성을 높이는 시작이네요.

접근성

배리어프리 사항을 정리하면서 장애인 동료들에게 모니터링을 부탁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될 분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실은 모르니까 물어보면서 하는 거죠.

홍보

<당선자 없음>에서 준비한 것들도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접근성 매니저님 말처럼 모르니까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일하고 없으면 만들고 해야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당선자 없음>이 어떤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접근성

이 질문의 답변은 준비했습니다. <당선자 없음> 대본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저 연극 안의 사람들이 배제한 목소리를 담으려던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요.” 이 대사를 들으면 배제되어 있는 이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 생기는데 그게 저의 역할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공연을 보는데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저도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공연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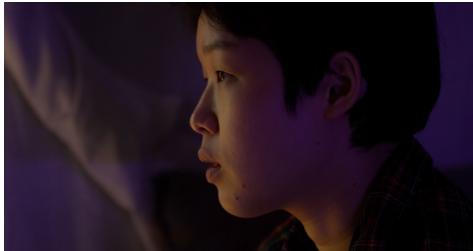
연극 <당선자 없음>의 공간적 개념은 객관적인 다수의 공간을 지향한다. 다큐멘터리적 연극성을 <당선자 없음>의 무대미술에 큰 중심으로 잡았으며 등장인물의 자유로운 동선과 극 중 서사의 입체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기본 디자인으로 삼았다.

공간은 무대와 객석의 구역만 있을 뿐 경계가 모호하다. 등장인물들은 극이 진행되는 서사적 공간과 관객의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관객으로 하여금 극장 전체를 무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 역시 자연스럽게 극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극장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단차가 없고 고정되지 않은 객석을 3면으로 활용하여 극장 전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연극 <당선자 없음>의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두산아트센터와 창작자들은 작게나마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했다. 공연 후 폐기되는 잔여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재나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물성 자체를 활용하는 오브제의 형태로 디자인했다.





작·드라마터그	이양구
연출	이연주
출연	김상보 박수진 신강수 이윤재 이주영 황은후
조연출·무대감독	이효진
무대조감독	마광현
무대디자이너	남경식
무대제작	에스테이지(s_TAGe)
대표	이윤중
제작팀장	정우상
제작팀	김세진 김용선 남기상 이승용 이종민 정병문 정우근 정재현 차승호
작화팀장	이남련
작화팀	신혜원 박윤경 박지원 조정숙
전식	제이컴
제작협력	와스테이지 제이컴
조명디자이너	신동선
조명어시스턴트	곽태준
조명오퍼레이터	권오성
조명팀	김지우 김희수 윤혜린 이택기 이현직 정하영 홍유진 홍주희
음향디자이너	목소
음향·영상오퍼레이터	임민정
음향팀	박진아 정하윤
영상제작감독	강상우 김동현
영상기술감독	윤민철
의상디자이너	김우성
분장·소품디자이너	장경숙
소품팀	박진경
일본어 대사 번역	정하민
일본어 대사 지도	강유미

영상·음성 출연	강상우 강유미 강혜숙 김다함 김소원 김은하수 배춘환 속희 신동선 이양구 이옥노 이효진 임영수 조마리 조인 하지성 홍유진
촬영협조	보탬상점 사계절출판사
촬영 도움주신 분들	김엘리 김태희 공현 박지영 이현진 장이정수
도움주신 분	변호사 김주범
배리어프리 제작	
접근성 매니저	강예슬
배리어프리 협력	공인수어통번역 잘함
수어통역	김홍남 최황순 이수현
음성해설	유주현
한글자막	강예슬 임민정
한글자막 오퍼레이터	이청
공연안내영상 수어통역	조영균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베르크
사진기록	서울사진관
영상기록	다이핀
인쇄	청산인쇄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후원	두산

두산아트센터

예술감독	강석란
기획매니저	박찬중 정다운
프로듀서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홍보마케팅매니저	강소라 강소정 윤빛나리 이수진
티켓매니저	이한별 최시윤
기술감독	김관수
조명감독	황동철 왕은지
음향감독	신승욱 류호성
무대감독	강현후 민지홍
하우스매니저	권지은 김현희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최희승 장혜정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박소연

참고 문헌

논문 혹은 단행본

- 김삼웅. 「헌민 유진오 평전: 헌법기초자」. 채륜. 2018.
- 김수용. 「해방 후 헌법논의와 1948년 헌법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대한민국민의원사무처. 『국회보』. 제20호. 1958.
- 신익희. 「신익희:좌우의 벽을 뛰어넘은 독립운동가」. 역사공간. 2014.
- 윤길중. 「이 시대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청국 윤길중 회고록」. 호암출판사. 1991.
-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은혜. 「쓰지 못한 단 하나의 오프닝」. 꿈꾸는 인생. 2021.
- 조광. 「헌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 황승흠.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2002.
-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기타 자료

- 제1회 국회의의록 제24호, 제25호.
- 제헌국회의 대한민국헌법. (『관보』 제1호(1948.09.01.))

그 외 다수의 자료를 참고했다.



두산아트센터 공모 안내 2022

공동기획

두산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작품을
지원합니다.
공동기획 작품은
Space111 무료 대관 및
소정의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
5월 9일(월) - 6월 8일(수)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공연제작비(작품당 1천만 원)
- 공연장(Space111), 부대장비
- 하우스 운영 인력(티켓 수표, 현장관객 응대)

* 선정단체 부담
• 제작/홍보마케팅/티켓/공연 운영
• 참여 배우/스태프 공연자 상해보험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공연기간
2023년 4월, 7~8월

대상
두산아트센터와 공동기획으로 Space111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품

- 자격/장르 제한 없음
- 재공연 작품 가능
- 최소 10회차 이상 가능한 작품

작품수
2편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 자료

접수방법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두산아트랩 공연

두산아트랩은
젊은 예술가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술가들은
두산아트랩을 통해
발전 과정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으며,
이후 작품 개발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모기간
6월 13일(월) - 7월 13일(수)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팀당 900만 원)
- 발표장소(Space111 또는 연습실),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공연기간
2023년 1~3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 장르 제한 없음
-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선정인원
8명 내외

- * 개인만 신청 가능
- * 예술단체인 경우 대표 창작자 이름으로 신청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 자료

접수방법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센터 2022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YONKANG
Hall

리지 뮤지컬 3.24-6.12

베어 더 뮤지컬 뮤지컬 6.22-9.18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10.1-11.20

광부화자들 연극 12.1-2023.1.22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2 1.12-2.19

김세은 개인전 3.2-4.2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4.20-5.25

kdk 개인전 6.15-7.20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8.3-8.31

업체eobchae 개인전 9.21-10.19

두산갤러리 기획전 11.16-12.17

DOOSAN
ART
CENTER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강연 4.4-5.30

두산아트스쿨: 미술 4.21-5.26, 10.13-11.10

두산아트스쿨: 공연 7.29-8.19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6.24-12.2

공모 프로그램

공연

DAC Artist 1.5-1.25

공동기획 5.9-6.8

두산아트랩 공연 6.13-7.13

미술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1.3-1.13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3.14

두산아트랩 전시 7.18-8.1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2

어느 별 좋은 날 음악극 1.27-1.29

작 박예슬 작곡 조한나 작창 안이호

낙지가 온다 연극 2.10-2.12

작 김도영 연출 민새롬

(겨)털 연극 2.17-2.19

작/연출 김유리

공의 기원 연극 2.24-2.26

각색/연출 김유림

GV 빌런 고태경 연극 3.3-3.5

각색/연출 이은비 대본구성/창작협력 김소정

유디트의 팔뚝 연극 3.10-3.12

작/연출 안정민 가이극작창 김민정

한남 제3구역 연극 3.17-3.19

작 원아영 연출 남선희

일분위 고독인 연극 3.24-3.26

작/연출 연지아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당선자 없음 연극 5.17-5.29

작 이양구 연출 이연주

웰킨 연극 6.7-6.25

작 루시 커쿠우드 연출 진해정

편입생 연극 7.5-7.23

작 루시 서버 연출 윤혜숙

공동기획

죽음의 집 연극 4.9-4.24

작 윤영선 윤성호 연출 윤성호

오버더태칭: 문전본풀이 판소리 8.6-8.20

작창/각색/연출 박인혜

DAC Artist

추다혜 신작 음악 9.27-10.15

구성/연출/출연 추다혜

클래스 연극 10.25-11.12

작 진주 연출 이인수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윤혜숙 신작 연극 11.29-12.17

연출 윤혜숙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